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827호

「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 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4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공간정보 분야 국가 자격종목으로 신설된 공간정보융합기능사·산업기사 자격시험이 '23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으로, 해당 자격 취득자가 공간정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의 개정이 필요함

일부 누락된 자격종목 추가 반영, 계속 인정되는 폐지된 자격종목 명시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직무분야 재분류 등 공간정보기술자 자격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리·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종목에 신설 및 누락된 종목을

추가하고, 계속 인정되는 폐지된 종목을 명시하며, 종목별 직무분야를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의 직무분야에 따라 재분류함(안 별표 1)

3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공간정보진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/ 정책자료 / 법령정보 /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(☎ 044-201-347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
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
- 팩스 : 044-201-5540